

양도 · 양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양도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양수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양도 · 양수하려는 사업의 종류						
양도 · 양수 시기						

「궤도운송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 · 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